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472
----------	------

발의연월일 : 2025. 1. 13.

발 의 자 : 임오경 · 김재원 · 김윤덕

이용우 · 조계원 · 박수현

진성준 · 윤호중 · 한병도

민형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등 중앙행정기관 중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이 있어 해당 규정에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음. 또한, 전문용어표준화 협의회가 구성되었더라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에서 전문용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와 국민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를 두도록 하고, 회의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전문용어를 적극적으로 표준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록 하고 국어문화를 보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3항 신설 등).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제2항 중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둔다”를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는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생 략)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 앙행정기관에 <u>전문용어 표준화</u> <u>협의회</u> 를 둔다.	② ----- ----- ----- <u>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u> <u>를 두어야 한다.</u>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용어 표 준화협의회는 <u>전문용어의 표준</u> <u>화 및 체계화에 필요한 사항을</u> <u>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u> <u>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u>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